

개인자격인증 지침서

(PI-01/Rev 11)



11	2021-11-01	4.4 항 인증 기관 전환 시 자격 요구사항 개정
10	2021-02-15	6.2 항 자격 갱신 요건 및 CPD 기준 변경
9	2020-06-29	5.5 항 표준별 개정에 따른 전환 요구사항 신설
8	2020-04-01	4.1.3 항 검증 심사원 조건부 승인 요구사항 개정
7	2020-01-03	4.4.4 항 인정평가사 자격의 전환
6	2019-10-08	4.4 항 구 버전 표준의 심사 기록 인정 내용 추가
5	2019-09-02	PCAA 인증 심사원 자격 스킴 추가
4	2019-02-08	4.1.1 항 실무 요건 명확화, ISO 45001 심사원 스킴 추가
3	2018-10-11	기관 전환 기준 및 심사원 등록 기준 명확화
2	2018-06-19	심사원 등급 등록 조건에 대한 개정
1	2018-03-19	KAB 문서 심사에 따른 개정 (4.1.2)
0	2017-11-01	ISO 17024:2012 에 따른 최초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	제/개정내용

1. 목적

본 지침서는 주식회사 피씨에이에이 (이하 인증원 또는 PCAA)의 개인자격인증의 원활한 평가 및 등록을 위함에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PCAA규정에 따라 ISO 및 산업 표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인증 절차 및 자격유지 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PCAA 원장이 별도로 규정을 정할 경우 이 기준의 일부로 본다.

2.1 인용 표준 (공통)

- ISO/IEC 17024
- IPC 요구사항 (필요한 경우)
- IAF 요구사항 (필요한 경우)
- ISO 19011

2.2 ISO 기반 표준

2.2.1 KAB 인정 스킴

<p>ISO 9001:2015 표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원 - 선임 심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 용어정의 및 기본 사항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 ISO /IEC TS 17021-3 적합성 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 3부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p>ISO 14001:2015 표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원 - 선임 심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 ISO 14050 환경경영시스템 - 용어 - ISO /IEC TS 17021-2 적합성 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 2부 환경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p>ISO 45001:2018 표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원 - 선임 심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 ISO /IEC TS 17021-10 적합성 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 10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2.2.2 PCAA 인증 스킴

<p>ISO 22000:2018 심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식품사슬상의 모든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p>ISO 27001:2013 심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호 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p>ISO 27017:2019 심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IEC 27002에 기초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안 통제 실무지침 (ISMS 하위 Scope)
<p>ISO 27018:2017 심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탁자 역할을 하는 공공 클라우드의 개인정보 보호 실무지침 (ISMS 하위 Scope)
<p>ISO 37001:2016 심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ISO 13485:2016 심사원	- 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규제 목적을 위한 요구사항
ISO 20000-1:2018 심사원	- 정보기술-서비스 관리
ISO 22716:2007 심사원	- 화장품-GMP-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ISO 22301:2019 심사원	- 사회안전-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스템-요구사항
ISO 39001:2012 심사원	- 도로교통안전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ISO 21001:2018 심사원	- 교육기관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
ISO 28001:2007 심사원	-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ISO 50001:2018 심사원	- 에너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
ISO 37301:2021 심사원	- 준법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내부심사원	- ISO 19011 경영시스템 심사 가이드라인
ISO 27701:2019 심사원	- 개인정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신규 표준에 대한 유예기간 요구사항(Interim Requirements)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ISO 표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개인자격의 경우 해당 지침 부속서를 참고한다.

개인자격 명	PCAA 자격 인증 지침서 명
품질 경영 엔지니어 (QME)	ZI-01
해외 인증 전문가 (ICE)	ZI-02
GMP 전문가	ZI-03

3. 용어의 정의

3.1 심사원보

심사팀의 훈련자인 참관인으로서 심사의 실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입증된 자. 심사팀장의 관리하에 일부 심사를 수행할 수 있음

3.2 심사원

ISO 19011에 따라 단독 또는 심사 팀원으로서 심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입증된 자

3.3 선임심사원

ISO 19011에 따라 심사팀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심사 전체에 대한 모든 심사측면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입증된 자

3.4 검증 심사원

선임심사원을 기본자격으로 심사팀에 소속되면서 심사팀장 또는 심사원을 검증 평가할 수 있는 자.

3.5 평가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 유지 및 심사수행범위 추가를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증 및 평가

3.6 신청자

심사원으로 자격인증, 유지 및 심사 표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자

3.7 인증심사원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및 검증 심사원의 통칭

3.8 인증제도

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및/또는 심사원 자격인증제도

4. 인증 심사원 자격인증 요구사항

심사원 자격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인증 요구사항을 보유하여야 한다.

4.1 최초 등록 시 자격 요구사항

4.1.1 사전 요구사항

1) 학력 요구사항

모든 심사원	고등학교 졸업 이상
---------------	------------

*심사원 보 등급의 경우 실무 학력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실무 경력 요구사항

모든 심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하는 표준의 분야에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 컨설팅 120일/4회 이상 제출 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으로 인정
---------------	---

*심사원 보 등급의 경우 실무 경력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연수 과정 수료 요구사항

연수과정 수료일이 최근 4년 이내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된다.

- ① PCAA가 승인한 연수기관에서 시행한 연수 과정
- ② 동등성 평가를 통해 PCAA 원장이 승인한 연수 과정

*비고1 동등성 평가는 TI-01 개인자격 연수기관 지침서의 12.5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전환'을 따른다.

*비고2 교육 수료 후 4년이 지난 경우 PCAA에서 진행하는 갭 시험(GAP Test) 평가를 합격해야 한다.

4.1.2 지식 평가 요구사항

1) 필기 시험

각 표준 별 필기 시험 합격일이 최근 4년 이내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된다.

- ① PCAA가 승인한 연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
- ② 동등성 평가를 통해 PCAA 원장이 승인한 기관의 시험

비고 지식평가(교육 수료)일이 4년 경과하였고 PCAA 갭 시험이 없는 표준의 경우 최근 4년 이내의 심사 기록을 제출한다면 갭 시험 없이 유효한 합격증으로 인정한다.

- 2) 필기 시험 문제 출제 유형,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절차는 'TI-01 개인자격 연수기관 지침서'를 따른다.

4.1.3 심사 경력 요구사항

심사원 등급	요구되는 심사 경력
심사원 보	심사경력 불필요
심사원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표준은 최근 4년 중, ① 심사일수: 최소 15일 이상 ② 심사경험: 전체 요구사항(최초 또는 갱신) 심사경험이 3회 이상 그 외 표준은 4.2항 규격 추가 참조
선임 심사원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표준은 최근 4년 중, ① 심사일수: 최소 20일 이상 ② 심사경험: 전체 요구사항(최초 또는 갱신) 심사경험이 3회 이상 ③ 심사 팀장으로서 최소 7일/최소 3회 이상 그 외 표준은 4.2항 규격 추가 참조 *타 기관에서 전환하는 경우 관련 항목 참조 *심사원 보 또는 심사원 등급에서 변경 시 4.3항 참조
검증 심사원	PCAA 에서 선임 심사원으로 3년 이상 유지 + 등급 상향 시, 검증 평가 시험 합격 비고 1) PCAA 선임 심사원인 자가 관련 표준 업무/심사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u>선임 심사원 자격 3년 이상 유지 조건 생략 가능</u> (표준 별 검증 심사원이 3명이 될 때까지) 단) 2021년까지 타 자격기관에서 3년 이상 유지한 선임심사원 인정

1) 심사 경력의 조건

심사경력 조건은 다음과 같다.

- 3자 심사 (인증심사 - 최초심사,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 2자 심사 (공급자 심사 - 최초심사,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신청하고자 하는 자격 표준과 동등한 표준으로 진행한 심사의 경우 인정됨
 - ISO/IEC 17001, 17021 등 국제 적합성 평가기준에 따른 인정/인증 심사(사무소와 입회 심사)
 - 기타 PCAA 가 동등한 심사활동으로 인정한 심사
- ① 2자 심사는 ISO 19011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표준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심사는 1일당 8시간 이상(식사시간 포함, 이동시간 제외)이어야 한다.
- ③ 심사 팀장으로서의 경력/경험은 2인 이상 팀으로 나간 심사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2) 심사경력 (심사로그/일지)

신청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심사경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의 형태 (전체 요구사항- 최초 또는 갱신, 부분 요구사항- 사후관리 심사)
- 심사 일정 (심사일자, 일자 별 심사일정 및 시간, 총 심사시간 및 현장심사 시간)
- 심사 표준(ISO 9001, ISO 14001, ISO 45001) 및 인증범위
- 피 심사 조직의 현황 (법인체 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연락처 등)
- 심사 팀원 명단
- 수행한 역할(심사원 훈련, 심사원, 선임심사원, 검증 심사원 등)
- 50% 이상의 로그에 피심사 조직의 경영책임자 서명이나 인증기관 대표자 또는 경영자대리인의 서명

비고 1 * 통합 심사의 경우 각각의 심사 M/D로 인정한다. (예: Q/E 통합 심사 3M/D 인 경우 각각의 3M/D로 인정한다)

비고 2 4년 이내의 OHSAS/KOSHA 18001의 심사 로그는 ISO45001 심사경력으로 인정한다.

4.2 인증 심사 규격 추가 시 자격 요구사항

본 지침서 4.1항에 따라 PCAA에 하나의 표준이상의 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자격을 추가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심사 경력 요구사항을 제외한 자격 요구사항은 4.1항의 기준을 따른다. 추가하는 자격은 이미 보유한 자격과 같은 등급으로 주어지며, 등급 상향은 본 지침서 4.3에 따른다.

4.2.1 심사 경력 요구사항

심사원 등급	요구되는 심사 경력
심사원 보	심사경력 불필요
심사원/선임심사원 /검증심사원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표준은 최근 4년 중, ① 심사일수: 최소 7일 이상 ② 심사경력: 전체 요구사항(최초 또는 갱신) 심사경험이 2회 이상
	그 외 표준은 최근 4년 중, 심사일수: 최소 7일 이상 또는 검증평가 1회

1) 심사 경력의 조건

본 지침서 4.1.3항 1) 과 동일

2) 심사로그 (심사 일지)

본 지침서 4.1.3항 2) 와 동일

비고 1 ^(유) ISO 37301:2021의 경우, 표준 발행일부터 12개월 동안 (2022년 4월 14일 까지) ISO 37001:2016 심사원이 ISO 37301:2021 심사원 교육을 수료하면 4.1항에서 요구하는 학력, 실무경력, 심사 경력 요구사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인증 심사 규격을 추가할 수 있다.

비고 2 ISO 27701:2019의 경우, ISO 27001 기존 자격 유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한 표준이며, 1회(검증평가 포함) 이상의 해당 표준에 대한 심사 경력이 요구된다.

4.3 심사원 등급 변경 시 자격 요구사항

4.3.1 심사 경력 요구사항

심사원 등급	요구되는 심사 경력
심사원 보	심사로그 불필요
심사원	<p>ISO 9001, ISO 14001, ISO 45001 표준은 심사원 보 또는 동등한 등급에서 변경 시 최근 4년 중, ① 심사일수: 최소 15일 이상 ② 심사경험: 전체 요구사항(최초 또는 갱신) 심사경험이 3회 이상</p> <p>그 외 표준은 심사원 보 또는 동등한 등급에서 변경 시 최근 4년 중, 심사일수: 최소 7일 이상 또는 검증평가 1회</p>
선임 심사원	<p>ISO 9001, ISO 14001, ISO 45001 표준은 심사원 보 또는 동등한 등급에서 변경 시 최근 4년 중, ① 심사일수: 최소 20일 이상 ② 심사경험: 전체 요구사항(최초 또는 갱신) 심사경험이 3회 이상 ③ 심사 팀장으로서 최소 7일/최소 3회 이상</p> <p>ISO 9001, ISO 14001, ISO 45001 표준은 심사원 등급에서 변경 시 최근 4년 중, ① 심사일수: 심사 팀장으로서 최소 5일 이상 ② 심사경험: 심사 팀장으로서 최소 3회 이상</p> <p>그 외 표준은 심사일수: 심사 팀장으로 최소 5일 이상 또는 검증평가 1회</p>
검증 심사원	<p>PCAA 에서 선임심사원으로 3년 이상 유지 + 등급 상향 시, 검증평가 시험 합격</p> <p>비고 1) PCAA 선임심사원인 자가 관련 표준 업무/심사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u>선임심사원 자격 3년 이상 유지 조건 생략 가능</u> (표준 별 검증 심사원이 3명이 될 때까지)</p> <p>단)2021년까지 타 자격기관에서 3년 이상 유지한 선임심사원 인정</p>

- 1) 심사 경력의 조건
본 지침서 4.1.3항 1) 과 동일
- 2) 심사로그 (심사 일지)
본 지침서 4.1.3항 2) 와 동일

4.4 인증 기관 전환 시 자격 요구사항

- 4.4.1 동등성 평가를 하여 PCAA가 승인한 기관의 유효한 심사원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 등급의 심사원 자격으로 전환이 가능 하다.
*단, 이전 기관에서 제재를 받은 심사원은 유효한 심사원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전환 제외된다.

비고 1 KAR를 제외한 타기관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표준 심사원이 전환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단, 적용 시점은 각 기관별 동등성 평가서를 따른다.

심사원 선임 심사원	최근 4년 동안 해당 표준에 대해 최소 3회 이상 심사 진행
---------------	-----------------------------------

- 4.4.2 PCAA가 동등성 평가를 하여 승인한 기관의 심사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지된 경우 심사로그 제출 및 보수 교육 진행 후 해당 등급의 심사원 자격으로 전환 가능하다.

*정지사유: 심사원비 미납으로 인해 기존 기관으로의 자격 회복 불가능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심사원 자격 갱신기간을 경과한 경우

(1) 심사 로그 제출 방식

심사원 선임 심사원	최근 4년 동안 해당 표준에 대해 최소 3회 이상 심사 진행
---------------	-----------------------------------

비고 1 심사원 자격 활성화를 위하여 정지된 심사원 자격의 복구에 필요한 심사로그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4년 이내의 기록을 인정한다.

이전 기관에서의 인증 주기와 상관없이 PCAA에 전환 승인 일자로부터 최초 인증일이 부여되며 그에 따른 인증 주기로 진행한다.

(2) 기존 자격 만료일 적용 방식

심사원 자격 정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기존 만료일로부터 1년 동안 심사원 자격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예) 기존 자격 기관에서 심사원 자격 만료일 2019년 12월 30일인 심사원이 (2) 방식으로 2020년 02월 10일에 PCAA로 전환하는 경우, 인증일은 기존 자격의 만료일을 소급 적용하여 2019년 12월 30일, 자격 만료일은 2020년 12월 29일, 자격 갱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 된다. 따라서, 2020년 12월에 사후 연회비가 재청구된다.

- 4.4.3 ISO 9001:2008, ISO 14001:2004 심사원이 전환 교육 수료 후, 2015년 버전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자격이 정지된 경우 4.4.2항에 따라 전환이 가능하다.
OHSAS 18001:2007 심사원이 전환 교육 수료 후, 2018년 버전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자격이 정지된 경우 4.4.2항에 따라 전환이 가능하다.

비고 1 전환 교육은 표준 별 전환 기간 동안 PCAA가 승인한 연수기관 또는 동등성 평가를 통해 PCAA 원장이 승인한 자격기관 또는 ISO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것으로써 규격 별 최소 8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

- 4.4.4 인정평가사가 인증심사원으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 1) 부여 가능한 심사원 표준 및 등급
인정기관에서 적격성을 부여한 기술범위 신청/평가서를 기준으로 한다.
- 2) 관련 업무 경력
표준과 관련된 업무 경력 총 2년 이상 또는 인정기관에서 수행한 신청 자격과 관련된 인정평가 경력 2년 이상 (문서 평가, 사무소 평가, 입회평가 포함)
- 3) 심사로그
4.1.3항에 따른다.
- 4) 관련 표준 교육
최신판 교육 수료증

4.5 동등성이 평가된 특정 표준의 심사로그에 대한 인정

자격인증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ISO 표준을 포함하여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표준의 심사원인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전환이 가능하다.

4.5.1 KISA ISMS 심사원

- 1) 부여 가능한 심사원 등급
KISA에서 적격성을 부여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2) 관련 업무 경력
표준과 관련된 업무 경력 총 2년 이상
- 3) 심사로그
ISMS-P 심사 로그도 ISMS (ISO 27001) 심사로그로 인정하며 최소 7일 이상의 심사 기록
- 4) 관련 표준 교육
최신판 ISMS 심사원 교육 수료증

5. 자격인증

5.1 신청 및 제출 서류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신청자는 소정의 신청비, 연회비,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PCAA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1 최초 등록 시 신청 자격 등급별 제출서류

심사원 등급	제출 필요 서류
심사원 보	① 4.1.2항에 의한 평가 합격 증명서류 1부 (PCAA에서 지정한 기관 또는 인정되는 기관의 시험 합격증 또는 인증서)
심사원	① 4.1.1항 1)에 의한 학력요건 증명 서류 (졸업장 또는 학위증 사본, 학력요건을 만족시킬 수

	<p>없는 경우 학력요건에 상응한 실무경력 요구사항 증명서류) 1부</p> <p>② 4.1.1항 2)에 의한 실무 경력 요건 증명서류 1부</p> <p>③ 4.1.2항에 의한 평가 합격 증명서류 1부 (PCAA에서 지정한 기관 또는 인정되는 기관의 시험 합격증 또는 인증서)</p> <p>④ 4.1.3항에 따른 심사 로그 기록</p>
선임 심사원	<p>① 4.1.1항 1)에 의한 학력요건 증명 서류 (졸업장 또는 학위증 사본, 학력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학력요건에 상응한 실무경력 요구사항 증명서류) 1부</p> <p>② 4.1.1항 2)에 의한 실무 경력 요건 증명서류 1부</p> <p>③ 4.1.2항에 의한 평가 합격 증명서류 1부 (PCAA 에서 지정한 기관 또는 인정되는 기관의 시험 합격증 또는 인증서)</p> <p>④ 4.1.3항에 따른 심사 로그 기록</p>

5.1.2 자격 등급 변경 시 제출 서류

1) 지원 자격

- ① PCAA의 유효한 심사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등급 상향을 하는 경우
- ② PCAA가 동등성 평가를 하여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기관의 유효한 심사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전환과 함께 등급 상향을 하는 경우

2) 제출 서류

심사원 등급 상향 신청서, 유효한 심사원 카드 또는 인증서, 신청서 제출 기준 선임심사원 교육 4년 이내 과정, 심사로그

3) 등급 상향비, 연회비

5.1.3 기관 전환 시 제출 서류

1) 지원자격

PCAA가 동등성 평가를 하여 동등성이 인정된 기관 또는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기관의 유효한 심사원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단, 이전 기관에서 제재를 받은 심사원은 유효한 심사원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전환 제외된다

2) 제출 서류

전환 신청서, 업무기술서, 유효한 심사원 카드 또는 인증서

3) 연회비

5.2 인증 평가/결정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PCAA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국제표준과 법규 등의 변경에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적용은 국제기구 또는

법에 따르며, 변경 내용과 기한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변경사항과 기한을 통지하여 신청자가 변경된 사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5.2.1 평가자 구성

자격 관리담당자는 경영체제 별로 자격신청자가 제출한 자격과 경력 등 적격성을 검토하여 인증 심의위원을 배정하여 인증 심의를 요청한다. 인증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심의 절차에 따라 신청자가 인증심사원 자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자격인증을 결정한다.

5.2.2 평가 내용

자격 관리담당자는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자에게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인증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된 자료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① ISO 19011의 7항(심사원의 적격성)에 의한 자질과 스킬	교육 수료증 (합격증)
② 학력, 실무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직무 기술서, 졸업증, 학위 등
③ 본 지침서 4항의 기준에서 요구되는 심사경력을 증빙하는 서류에 대한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가 요구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총 심사횟수, 심사일수 및 현장심사일수 - 심사형태 (최초심사, 사후관리 심사, 갱신심사) - 심사일지, 심사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 등

5.2.3 PCAA는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로 작성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 자격인증을 거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등록 이후 확인된 경우, 신청한 경영 체제를 포함하여 PCAA에 등록된 모든 경영체제에 대한 심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3 인증 승인 프로세스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 여부는 인증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PCAA 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PCAA 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자격인증기준에 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자격 부서장이 결정한다.

5.4 인증서 발행 프로세스

5.4.1 인증서와 ID카드 는 신청자가 신청한 범위에 한하여 발부한다. 인증서에는 ‘자격인증 심의 및 발행절차’에 따라 독점적이고 소유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등록된 PCAA 로고와 인정을 승인한 인정기관 로고와 대표자가 서명이 포함된 문서로 발행한다.

5.4.2 자격인증서 및 ID 카드

PCAA에 등록된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또는 검증 심사원에게 다음 사항이 명기된 자격인증서와 ID카드를 발급한다.

- 성명
- ID 번호
- 인증기관 명
- 인증표준

- 자격등급
- 자격인증일자 및 만료일자
- 인증서/카드 유효기간

- 5.4.3 자격인증서 및 ID 카드는 납부한 연회비에 따라 유효기간을 표기하여 발행한다.
- 5.4.4 최초로 PCAA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인증서 및 카드를 무료로 발급한다.
- 5.4.5 2019년 10월 01일부터 카드만 인쇄하여 발송하며 인증서는 심사원 개별적으로 PCA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5 표준 개정에 따른 전환 요구사항

- 5.5.1 표준이 개정되어 기존 심사원 자격이 개정된 자격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이때 발행되는 자격증은 구버전과 개정된 버전의 표준을 병기하여 발행하며 구버전의 표준의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 (통상 개정판 발행일 이후 3년) 신버전의 표준만 기재하여 발행한다.

표준	개정판 발행일	전환 교육/기준	전환 시험
ISO 22301:2019	2019-10	- ISO 인증기관에서 진행한 전환 교육 인정 (HLS 구조가 적용된 표준의 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심사원의 경우 8시간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 16시간 이상)	2020-11-01 부터 PCAA 전환 시험 적용
ISO 19011:2018	2018	- 2020년 이후 19011:2013 버전으로 받은 교육부터는 합격증 인정 안됨 (4년 경과된 수료증과 마찬가지로 2018버전 AMS 시험 응시)	2020-01-01 발행된 합격증부터 PCAA 전환 시험 적용

6.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정지 취소

6.1 인증 심사원 자격의 유지

- 6.1.1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 심사원의 자격유효기간은 자격인증 승인일을 기준하여 3년으로 하며, 이후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6.2에 따라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6.1.2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 심사원 및 검증심사원은 자격유지를 위한 연자격 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및 자격유지 등의 신청을 할 수 없다.

6.2 인증 심사원 자격의 갱신

6.2.1 자격갱신 요건

심사원 보를 제외한 모든 심사원 등급에서는 인증 심사원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심사경력, 지속적인 전문적 개발활동 경력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1) 심사경력

A. 기본 갱신 기준

심사경력은 상기 4.1.3항에 정의된 심사경력을 뜻하며 이외에 허용 가능한 심사 경력은 다음과 같다.

- 유효기간 이내에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대한 전체 요구사항(최초 또는 갱신) 심사를 수행한 경력
- 기타 PCAA의 원장이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

심사원 등급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심사원 보: 해당 사항 없음
- ② 심사원: 자격등록 이후 3년 이내의 해당 표준에 대한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표준은 10일/전체 요구사항(최초 또는 갱신 심사) 2회 이상, 그 외 표준은 2일/2회 이상 또는 검증평가 1회
- ③ 선임(검증)심사원: 상기 ②심사원 갱신 조건에 심사팀장으로서 전체 요구사항(최초 또는 갱신심사) 2회 이상 포함(단독 심사도 인정), 그 외 표준은 심사팀장으로서 2회 이상 포함(단독 심사도 인정) 또는 검증평가 1회

B. ISO 인증기관 입회평가 기록 적용 기준

인증원에 소속되어 주기적을 모니터링 평가를 받는 심사원의 경우 인증원의 모니터링 결과서를 제출시 2일 이상의 심사로그를 추가 제출하여 심사경력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다.

(2) 지속적인 전문적 개발활동 경력

심사원 및 선임(검증)심사원 자격갱신 신청자는 자격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속적인 전문적 개발활동을 최소한 45시간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정부, 한국인정지원센터, PCAA, ISO 인증기관, 연수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영 관련 교육 또는 세미나/워크샵 참가
- ② PCAA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또는 심사원 컨퍼런스/연찬회 참가
- ③ 관련 ISO 규격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 참가
- ④ IAF, PAC 또는 IPC 회의 참가
- ⑤ ISO/TC 176 국내전문위원회 위원 활동
- ⑥ 관련 규격에 대한 강의, 교재개발, 시험문제 출제 실적
- ⑦ CPD 온라인 시험 합격
- ⑧ 기타 PCAA 원장이 지속적인 전문적 개발활동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경력

비고 1 지속적인 전문적 개발활동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고 2 ISO 및 관련 산업 분야 경력으로 해당시간을 채울 수 있다.

비고 3 통합 표준에 대한 주제인 경우 각 자격에 대한 필요 시간으로 인정한다. (예: PCAA에서 진행한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 관련 세미나 8시간 수료 인 경우 품질/환경/안전보건 심사원 자격에 필요한 지속적인 전문적 개발활동 시간 각 8시간씩 인정)

비고 4 지속적인 전문적 개발활동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비고 5 성공적으로 완수한 시험에 한하여 심사원 자격 갱신 CPD 요구 시간 중 8시간을 인정한다.(시험은 기본 40문제로 설정) 온라인 CPD 시험은 갱신 기간동안 최대 30시간을 인정한다. 응시한 시험과목이 여러 표준에 연관되는 경우 각 표준에 대한 시간을 인정한다. (예: 경영시스템 기법 시험 - 관련 표준 "Q, E, O" 인 경우 각각 8시간씩 인정)

비고 6 CPD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과목당 40문제 이상일 경우 최대 8시간을 부여하며 출제된 문제 검토 및 출제 개수가 그 이하인 경우 비례하여 차감 인정한다.

6.2.2 자격갱신 신청 프로세스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인증심사원 자격갱신 신청서(신청비용 포함)와 다음의 갱신요구사항에 따라 자격갱신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갱신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없다.

(1) 심사원 등급별 제출 자료

- ① 심사원 보: 자격인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심사원/선임(검증) 심사원
 - 심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심사일지
 - 지속적인 전문적 개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자가 자격갱신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PCAA의 자격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3)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로 작성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 자격인증을 거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등록 이후 확인된 경우, 신청한 경영체제를 포함하여 PCAA에 등록된 모든 경영체제에 대한 심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2.3 자격갱신 평가 프로세스

갱신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현장평가 경력과 전문성 개발 경력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갱신평가 및 승인은 상기 5.2, 5.3항의 최초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인증서와 ID 카드를 발행하고 홈페이지 등 심사원 등록부를 최신화 한다.

6.3 자격 정지 또는 취소

PCAA에 등록된 심사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인증의 정지와 취소, 재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인증정지 및 취소 절차서'를 따르며 인증의 정지와 취소의 결정은 '자격인증 신청 및 심의, 발행 절차서'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6.3.1 자격 정지

PCAA에 등록된 심사원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 인증을 정지한다.

- ①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 ② 자격 유효 기간 내에 인증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③ 자격 유효 기간 내에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6.3.2 자격 취소

PCAA에 등록된 심사원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 인증을 취소한다.

- ① 문서의 위조 및 변조, 허위기록 작성 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및 검증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았거나 갱신 받은 경우

- ②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서/ID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③ 인증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④ 인증정지 처분을 받은 당해 연도에 재차 심사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⑤ 심사활동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조장, 교사 또는 지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⑥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 ⑦ 기타 자격인증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자격 취소에 따른 자격증 사용과 자격증 반납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인증서와 ID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6.3.3 재신청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 이후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재검증 심의 후 인증심사원으로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경영체제의 자격인증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7. 인증서, 로고 및 마크 사용

7.1 인증마크 또는 로고 사용에 대한 관리

‘인증서, 로고 및 마크 사용절차서’에 따른다.

7.2 자격인증 내용의 변경 및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서 재교부

7.2.1 인증심사원은 자격인증 내용(주소, 연락처, 근무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PCAA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2.2 자격인증서 또는 ID카드를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발급을 원할 경우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PCAA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 불만 및 이의제기의 처리

모든 이해관계자는 PCAA에 등록된 모든 심사원의 심사활동과 PCAA의 자격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는 PCAA에게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자격인증 신청자가 자격 인증, 갱신, 정지, 취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PCAA에게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 및 이의를 제기 받았을 경우, PCAA는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절차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9. 윤리강령

9.1 ISO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원 윤리강령

(PCAA 지침 및 인증 제도의 준수)

- I. ISO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원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II. 법령 또는 인증 제도의 기준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성이 있는 심사 활동을 추구한다.
- III. 심사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공평성 유지)

- IV. 이해상충에 개입하거나 심사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 V. 피심사자, 그 종업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심사 전/후 또는 심사기간 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자기 개발)

- VI. 심사능력 배양과 심사활동에 대한 신뢰성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VII. 심사기량 향상에 노력을 한다.

(기밀 정보)

- VIII. 피 심사조직 또는 심사를 수행한 기관의 서면 요청 없이, 심사과정에서 입수된 고객정보 등 심사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IX. 심사 또는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시 진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9.2 산업기반 개인자격 윤리강령

- I. PCAA 자격인증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II. 법령 또는 제도의 기준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성이 있는 활동을 추구한다.
- III.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IV. 인증된 자격과 연관된 능력 배양과 기량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V. 자격 활동 과정에서 입수한 기밀 정보에 대한 기밀을 준수한다.

10. 비용 체계

부가세 포함

구분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검증심사원
신청비	-	110,000		-
연회비 (기관 전환 시에도 적용)	55,000	110,000	143,000	143,000
등급변경	88,000			
인증서+카드 발급	11,000 원 (단, 최초 인증/전환 시 1 회에 한하여 무료)			

※신청비는 최초인증 신청 시에 지불하는 금액이며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는 금액임
 ※상기 금액은 규격 별 (표준 별) 금액이며 부가세 포함 금액임
 ※3 년치 연회비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총 금액에서 10% 할인을 적용한다. (단,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